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97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태년 · 이광희 · 김한규
한준호 · 홍기원 · 이정현
서영석 · 김 윤 · 이주희
조인철 · 문금주 · 김 현
정일영 · 민홍철 · 김우영
박정현 · 이상식 · 박홍배
손명수 · 남인순 · 서삼석
이수진 · 민형배 · 송재봉
오세희 · 김남근 · 김용만
김원이 · 박 정 · 소병훈
조정식 · 최혁진 · 민병덕
송옥주 · 김영호 · 어기구
김기표 · 윤종균 · 김영배
한민수 · 박희승 · 곽상언
김문수 의원(4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거부나 의사진행 기피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교체) ① 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안건(이하 “교체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수 있다.

1.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0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한 경우

② 교체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요구가 있

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0조제5항 중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

⑥ 의장은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개최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소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最多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소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最多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교체) ①</u> <u>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안건(이하 “교체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수 있다.</u></p> <p>1. <u>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u></p> <p>2. <u>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p> <p>3. <u>제50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u></p> <p>4. <u>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한 경우</u></p> <p><u>② 교체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p>	<p>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p>

(생략)

<신설>

<신설>

제50조(간사) ① ~ ④ (생략)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0조(간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

<신 설>

<신 설>

<신 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③ (생략)

<신 설>

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

⑥ 의장은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

<신 설>

큰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
니하여 소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
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
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最多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장이 소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
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
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
하지 아니하여 소위원회가 활
동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원활
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의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
(最多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규정에

④ ~ ⑨ (생략)

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개최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
다.

⑥ ~ ⑪ (현행 제4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